

# 국무조정실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전화(02)3703-2157~60 /전송 732-7155  
규제개혁1심의관실 과장 최기조 담당서기관 정현용

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 - 297  
2.8

시행일자 2000. 1. 31. (년)

받음 수신처참조

참조 규제개혁담당관

보존기간		실장	국무총리
공개여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조정관		2000. 1. 31. (년)	
심의관		기획심의관	
과장			
기안자	정현용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2000년도 부처별 중점 규제개혁 추진과제 확정 · 통보 (국무총리 지시 제2000-6호)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시달한 「2000년도 규제정비지침」(국무총리지시 제1999-27호, '99.11.14)과 관련, 귀 부처가 제출한 2000년도 중점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제46차 규제개혁위원회(2000.1.28)의 의결을 거쳐 불임자료와 같이 확정하였으니 해당부처에서는 중점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상정 최소 1개월전에 소관 분과 위원회에 상정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붙임 : 2000년도 부처별 중점 규제개혁 추진과제. 끝.

##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 15, 16, 19, 20, 31~47, 52~55, 57~67

## 2000年度 重點 規制改革課題

주관부처	중점과제명	주진일정
전부처 공통	①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2000.7
재정경제부	② 동일인 신용공여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	2000.7
	③ 금융업 진입규제 및 겸업 관련 규제개혁 방안	2000.10
	④ 금융기관 영업관련 규제개혁 방안	2000.9
금융감독 위원회	⑤ 코스닥 시장 건전 육성을 위한 관련규제 개선 방안	2000.3
	⑥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 관련 규제개선	2000.4
	⑦ 보험영업관련 규제개혁 방안	2000.5
공정거래 위원회	⑧ 산업의 진입, 가격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수시
	⑨ 대규모 집단관련 규제개선	2000.11
	⑩ 시장지배적 사업자 심사기준 개선방안	2000.5
	⑪ 다단계 판매업 등 관련 규제개선방안	2000.7

주관부처	중점과제명	추진일정
건설교통부	⑫ 도시계획지역지구제 개선방안	2000.3
	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관련 규제 개선	2000.4
	⑭ 공공공사 입찰관련 규제개선방안	2000.5
	⑮ 건축관련 규제개선	2000.9
	⑯ 토지이용관련 규제개혁방안	2000.8
	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2000.7
산업자원부	⑱ 수도권산업입지관련 규제개선	2000.6
	⑲ 형식승인, 품질인증관련 규제개선	2000.6
	⑳ 에너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2000.9
	㉑ 전력기술관리관련 규제개선 방안	2000.10
중소기업청	㉒ 중소기업 고유업종관련 규제개선방안	2000.6
	㉓ 단체수의 계약제도관련 규제개선방안	2000.11
관세청	㉔ 각종 보세구역 지정·운영관련 규제개선 방안	2000.9
행정자치부	㉕ 소방행정관련 규제개혁	2000.7
	㉖ 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등 규제완화 방안	2000.8
	㉗ 광고물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	2000.7
	㉘ 지방자치단체 증명민원서류 감축 방안	2000.6
	㉙ 인감증명제도 개선	2000.10

주관부처	중점과제명	추진일정
교육부	⑩ 학원설립·운영관련 규제개혁	2000.5
	⑪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관련 규제개혁	2000.6
	⑫ 외국인학교 설립관련 규제개혁	2000.5
	⑬ 사립학교 교장자격 인정관련 규제개혁	2000.2
노동부	⑭ 고용보험제도관련 규제개혁	2000.10
	⑮ 법정 퇴직금 관련 규제개혁	2000.8
	⑯ 국가자격 검정관련 규제개혁	2000.6
	⑰ 전자직업소개업 관련 규제개혁	2000.5
	⑱ 근로자 공급 혜가제 관련 규제개혁	2000.11
법무부	⑲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제도 개선 방안	2000.11
	⑳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발급 관련 규제 개혁	2000.11
	㉑ 보호외국인 관련 규제개혁	2000.3
문화관광부	㉒ 영상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2000.10
	㉓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련 규제개혁	2000.9
	㉔ 문화재보호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2000.5
보건복지부	㉕ 의료보험관련 규제개선방안	2000.8
식품의약품 안전청	㉖ 의약품 등 검사관련 규제개혁	2000.8
병무청	㉗ 병역특례제도 관련 규제개선	2000.7

주관부처	종 침 과 제 명	추진일정
경찰청	④8 자동차 운행관련 규제 개선	2000.7
농림부	④9 농업관련 인·허가 업무절차 간소화 방안	2000.4
	⑤0 축산관련업의 진입규제개선	2000.7
	⑤1 농촌개발 및 지원관련 규제개선	2000.10
농촌진흥청	⑤2 농약유통 및 안전관련 규제개선방안	2000.2
산림청	⑤3 임산물의 굴취·채취·매각관련 규제개혁 방안	2000.3
	⑤4 산지의 보존 및 이용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	2000.9
정보통신부	⑤5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 관련 규제개선	2000.4
	⑤6 정보통신사업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2000.9
환경부	⑤7 공원지역내 행위제한 규제개선	2000.3
	⑤8 폐기물 재활용관련 규제개선	2000.8
	⑤9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관련 규제개선	2000.11
	⑥0 환경산업업종 합리적 개선방안	2000.12
과학기술부	⑥1 위탁대행기관관련 규제개선	2000.9
해양수산부	⑥2 해운산업의 진입규제 및 운항관련 규제개선	2000.6
	⑥3 항만분야 규제개혁 방안	2000.10
	⑥4 수산업분야 진입규제 등 개선방안	2000.11

“새마음 새희망 새전년 새출발”

## 정자지

우110-760/종로구 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1106호 /전화3703-4622(행)4622 /전송3703-5529  
조직정책과 과장 김우철 서기관 전성태 담당자 김형목

문서번호 조정 12210-62

시행일자 2000. 2. 17

(제 1 안)

경유

수신 내부결재

참조

보존기간		장관	국무총리
공개여부			
차관	22	22	
국장	22	기획관리실장	
과장	김숙희	조직관리과장	서필근
기안자	전성태	행정제도과장	2000-7호 협조
심사자	김해자	심사일	2000. 2. 17

### 제목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시행(국무총리지시 제2000-7호)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2000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0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제 2 안)

받는곳 : 받는곳 참조

제목 : 2000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0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받는곳 : 가(-03~04), 나, 다, 라.

(제 3 안)

받는곳 : 받는곳 참조

제목 : 2000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

2000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0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받는곳 : 가(03~04),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 2000年度 政府組織管理指針

2000. 2.

行政自治部

# 順序

- ① 2000年度 政府組織管理 目標
- ② 2000年度 政府組織管理 方針
- ③ 主要施策
  - I. 政府組織의 安定化 및 活性化 圖謀
  - II. 政府組織의 效率性 및 競爭力 強化
  - III. 知識情報화에 對備한 政府組織體系 構築
  - IV. 委員會 整備 및 權限의 委任·委託等 推進
- ④ 行政事項

## 2000年度 政府組織管理 目標

새千年·새時代의 要求에 副應하는  
『競爭力 있고 創造的인 知識政府』 具現

- 21世紀 國家間 無限 競爭體制가 본격화됨에 따라
    -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사·기업·금융등 3대 부문의 혁신 노력과 함께
    - 정부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
  - 또한, 知識情報化 社會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 변화와 혁신에 창의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지식과 정보를 유용하게 공유·활용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정부구현이 필요
  - 따라서, 새 천년의 政府組織管理 目標는
    - 정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의 '기본 틀'을 정립하고
    -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효율적인 정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 ⇒ 21세기 先進 一流國家 跳躍의 基盤을 마련

## 2000年度 政府組織 管理方針

### □ 政府組織의 安定化 및 活性化를 圖謀한다

-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한다.
- 정부조직의 자율성 신장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 政府組織의 效率性과 競爭力を 強化한다

-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효율화를 추진한다.
- 성과중심의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 □ 知識情報化時代에 맞는 政府組織體系를 構築한다.

-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정부기능의 발전방안을 정립한다.
- 정부조직관리 체제에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한다.

### □ 委員會 整備, 行政權限의 委任 및 民間委託・移讓을 적극 推進한다.

- 정부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위임·위탁·이양을 확대한다.

## 主要施策

### I. 政府組織의 安定化 및 活性化 圖謀

#### 1. 政府組織改編 後續措置의 早速 마무리

- (1)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각 부처는 '99. 5. 24 제2차 정부조직개편시 확정된 '2000년도 인력감축 및 기구개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며, 초과현원 해소 등 조직의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 政府組織의 柔軟性 및 自律性 擴大

- (1) 행정자치부장관은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조직관리 및 정원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팀·단』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활용 가능분야의 발굴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 개방형직위의 지정·해제에 따라 유연하게 조직관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방식을 개발한다.

- 정원 범위내에서 시간제공무원, 단기간 근무공무원 활용 등의 탄력적 인력운영형태 도입을 추진한다.
- 행정직렬로만 규정되어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해당부처의 실정에 맞게 기술직렬로도 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2) 각 부처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율적 조직관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

- 총리령(또는 부령)에 위임된 과단위이하 하부기구의 자율개편권과 직급별 정원범위내 기관간 정원의 배정 및 이체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 긴급한 행정수요 및 업무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Project team 및 Task force 등 임시조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속 5급(4·5급포함)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상계하여 계약직공무원 정원을 둘 수 있다.
- 부서별 정원의 통합운영에 따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단위별 정원배정을 실·국단위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II. 政府組織의 效率性 및 競爭力 強化

### 1. 政府組織의 合理的 改編 推進

(1) 행정자치부장관은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정부기구의 강화 및 능률화를 구축하고, 21세기에 역할증대가 예상되는 여성의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000년 대통령 민·관합동 시무식 신년사(2000. 1. 3)

(2)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개편시 정부 주도의 개편방식을 지양하고 국민여론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청회 개최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 2. 政府組織 및 人力의 效率的 管理·運用

(1)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부처는 단순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인력의 확대를 억제하고, 법령 제·개정 및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분야는 기존조직을 상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부처는 지방이양 및 민간위탁 등을 통한 자율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원 감축을 시행함에 있어 기관간·직급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 (3)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3년간의 정원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조직 및 인력의 증가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새로운 인력수요는 기관간 정원조정을 통하여 대처토록 하므로써 총정원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4) 각 부처는 총정원제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중장기적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소관업무중 민간위탁·이양, 지방 이양 및 기능폐지 등 인력감축분야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 (5)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기구·인력의 감축 및 신규수요분야 재배치, 민간위탁 등 국가 공무원에 준한 조직의 감축관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 3. 責任運營機關制度의 定着 및 發展

- (1)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책임운영기관 시행 부처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운영상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제도의 조기정착 및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 기획예산처장관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별도의 익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특별회계 관리·운영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행정자치부장관 및 책임운영기관 시행부처의 장은 책임운영 기관제도의 미비점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경우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4)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 진단결과 및 책임운영기관 운영 실태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확대 적용할 대상기관을 발굴한다.
- (5) 행정자치부장관과 책임운영기관 시행부처의 장은 책임운영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평가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고, 기관 실정에 맞는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 (6)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4. 政府 組織診斷의 內實化

- (1)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에 대한 진단방식을 과학화·내실화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동진단을 실시한다.

##### ※ 2000년도 역점진단분야

-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의 시행에 따른 정부기능의 민간·지방이양, 행정기관의 축소·정비 등 기구 및 정원감축이 가능한 분야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시행에 따라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정부사무중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설치·운영이 보다 효율적인 분야

- (2) 각 부처는 소속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자율감축 분야 및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설치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는 등 기관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5. 2001年度 所要定員의 策定

(1)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부처는 총정원령에 따른 각 부처별 3년간의 정원감축 규모 및 분야별 정원관리기준을 고려하여 2001년도 소요정원의 규모를 책정하여야 한다.

### ※ 분야별 정원 관리기준

- 교원에 대한 신규수요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대처
- 경찰·공안분야는 본부 및 지방청 등 중간감독기관 감량화와 파출소 광역화 등을 통해 신규수요에 대처
- 우정·철도 등 협업분야는 경영합리화계획에 의거 감량화
- 중앙부처 일반분야는 기존 정원을 최대한 상계활용

## 6. 公務員 定員監査의 強化

(1) 행정자치부장관은 직제통칙 제28조에 의거 각 부처 조직 관리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정원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한다.

- 정원운영의 조직관계법령 및 지침에의 적합성
- 총리령(또는 부령)에 위임된 기관간 또는 직급간 정원 배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지도한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감사를 조직진단 또는 인사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행정자치부장관은 정원감사 결과 부당한 정원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통보하고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7. 政府傘下團體의 效率的 管理

- (1) 각 부처는 『정부산하단체 조직관리강화에 관한 훈령』('92 국무총리훈령 제259호)에 따라 정부산하단체에 대하여 정부조직관리에 준하여 기구증설이나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 (2) 각 부처는 산하단체 신설시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행정기관 및 기존 산하단체와 기능상 중복되거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1) 협의대상 : 정부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
- 공사 · 사업단 · 정부출연 교육기관 등 공공성이 큰 단체
    -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교육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 정부에서 전액 출연한 기금으로 운용되는 단체
    - 100%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
    - 법령에서 독점적 사업을 부여 받고 공공적 이해관계가 큰 단체
  - 법률에 근거를 두는 「협회」 등
    - 전적으로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
    - 신설되는 협회에 관계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명확하게 정부와 연계를 가지는 단체
- 2) 협의시기 : 관련법령 제 · 개정 협의시
- (3)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산하단체 신설협의시, 정부조직과 동일한 차원에서 그 필요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 III. 知識情報化에 對備한 政府組織體系 構築

#### 1. 政府機能에 대한 發展方案 定立

- (1) 행정자치부장관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정부 기능의 전략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수행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개별 정부기능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분석 제시한다.
- (2)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능분석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리된 분석자료는 DB화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組織管理 情報시스템」 構築 · 運營

- (1)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관리 통계자료 활용을 체계화하고 정책수립의 일관성 유지 및 투명한 조직관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한다.
  - 정원배정표, 총정원, 하부기구 수 등 조직관리 관련통계의 DB화 및 전산처리
  - 조직관리 관련정책자료 및 직제(시행규칙)의 검색 및 공동 활용
- (2) 각 부처는 정원배정표, 정부위원회 현황 및 산하단체 현황 등의 각종 조직관리 관련보고를 「조직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 IV. 委員會 整備 및 行政權限의 委任·委託·移讓 推進

### 1. 委員會 新設抑制 및 委員會內 市民團體 參與 擴大

(1) 각 부처는 '99년도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중 법령 조치되지 않은 위원회를 조속히 정비하고,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관위원회중 운영이 부진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자체 정비토록 한다.

※ '99년 미조치 위원회 현황 : 붙임 1 참조

(2) 각 부처는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통보된 「정부위원회 운영지침(조정 12290-39, '99. 2. 20)」에 따라 위원회를 엄격히 운영·관리한다.

(3) 각 부처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시민의 감시기능 강화로 정책결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붙임 3 「정부 위원회내 시민단체 참여확대 지침」에 의거하여 위원회내 위촉위원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중을 2001년 까지 20% 수준에 달하도록 단계적으로 조치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위원회내 시민단체 참여확대 지침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중에 부처별 시민단체 참여확대 지침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한다.

## 2. 行政權限의 所屬機關 委任 및 民間委託 · 移讓 推進

### 가. 對象事務의 發掘 · 推進

(1) 각 부처는 '99. 5. 24 정부조직개편시 확정된 '99년도 민간위탁·이양추진사무중 미조치사무 및 2000년도 민간 위탁·이양 추진 확정사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민간위탁·이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 '99. 5. 24 민간위탁·이양추진 확정사무 : 복임8 참조

(2) 각 부처는 소관사무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민간에 위탁·이양할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한다.

-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사무, 구체적인 정책 집행사무, 일상적 반복사무 등을 소속기관으로 위임
- 협업 및 생산·제작기능, 단순집행기능, 연구·조사·검사기능,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기능 등을 민간으로 위탁 또는 이양

(3) 각 부처는 기능이관에 앞서 이관대상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 수용태세 등을 정밀분석한 후 실시한다.

(4) 각 부처는 단위사무 보다는 포괄적인 기능 중심으로 이관을 추진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5) 각 부처는 민간위탁시 기통보한 『민간위탁업무처리지침』(조정12240-177, '99.8.21)에서 규정한 기준 및 절차, 방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여야 한다.

- (6) 각 부처는 업무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동일한 기능을 2개 이상의 기관에 위탁·이양함으로써 기관간 상호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 (7)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관리와 연계하여 민간위탁·이양 대상기능을 적극 발굴하고, 실제개정시 이를 반영한다.

#### 나. 事後管理의 強化

- (1) 각 부처는 이관된 사무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전승인·보고·협의 등 사실상의 사전통제를 지양한다.
- (2) 각 부처는 이관된 사무처리기관에 대하여 각종 정보 및 기술의 제공, 인력과 예산의 이관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민간단체·협회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 (3)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개별법령 제·개정시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급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위임·위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현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위임·위탁되어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최초 개정시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 (4) 각 부처는 이관된 사무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
- (5)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처별 민간위탁·이양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독려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이양방안을 강구한다.

## 行政事項

### 1. 2001년도 소요정원 제출

(1)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 지침 8쪽을 참조하여 「2001 소요정원(안)」을 2000. 4. 30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함.

### 2. 위원회 정비 및 시민단체 참여확대

(1) '99년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중 아직 조치되지 아니한 [붙임1]의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부처는 2000. 6. 30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되,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최초 법률 개정시에 반드시 조치하기 바람

(2) 다만, 2000. 6. 30까지 조치되지 아니하는 위원회 또는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최초 법률개정시에 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의 장이 미조치사유 또는 조치불가사유를 [붙임2]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2000. 6. 30까지 행정자치부(조직정책과)에 제출 바람

(3) 각 부처는 [붙임3]의 「정부위원회내 시민단체 참여확대지침」에 의하여 2000. 6. 30까지의 시민단체 추천자 위촉실적과 향후 계획을 [붙임4]의 서식에 의거 2000. 7. 31까지, 그리고 각 부처별로 시민단체 추천 위촉위원의 선정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2000. 2. 29까지 행정자치부(조직정책과)로 각각 제출하기 바람

### 3. 행정권한의 소속기관 위임 및 민간위탁·이양

- (1) 각 부처는 '99년도 소속기관 위임(지방위임 포함) 및 민간 위탁(타기관 위탁 포함)·이양 추진실적(『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한 소속기관 위임 및 민간위탁·이양사무 포함)을 [붙임5]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2000. 3. 31 까지 행정자치부(조직정책과)에 제출하기 바람
- (2) 각 부처는 '99. 5. 24 정부조직개편시 확정된 [붙임8]의 '99년도 민간위탁 및 이양추진 확정사무중 미조치 사무에 대하여는 미조치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붙임6]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2000. 3. 31까지 행정자치부(조직정책과)에 제출바람
- (3) 각 부처는 2000년중에 조치예정인 소속기관 위임 및 민간 위탁(타기관 위탁 포함)·이양 대상사무와 그 조치계획을 [붙임7]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2000. 3. 31까지 행정자치부(조직정책과)에 제출하기 바람

### 4. 「조직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 각 부처는 정원배정표 통보, 정부위원회 현황보고, 산하단체 현황보고 등의 각종 조직관리 관련 보고자료는 새로 구축·운영할 「조직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통보하기 바람
- (2) 「조직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사항은 시스템 구축 완료후, 별도의 일정에 따라 담당자 교육 및 운영방법, 보고대상 등을 통보할 예정임

## 【붙 임 1】

**'99년 정비대상위원회중 미조치 위원회**

부처명	위원회명	정비내역	근거
계	35개		
<u>국무총리실</u> (1개)	<u>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u>	폐지	대통령령
국방부 (2개)	국립묘지안장심사위원회 방위산업물자조달계약및원가관리위원회	폐지	대통령령
행정자치부 (3개)	중앙제안심사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지원위원회 중앙긴급구조본부운영위원회	폐지	대통령령
교육부 (2개)	중앙산업교육심의회 국비유학자문위원회	폐지	법률
과학기술부 (1개)	생명공학실무추진위원회	폐지	법률
문화관광부	한국문현번호운영심의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설치근거 하향조정 폐지	대통령령 법률
중소기업청 (1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폐지	법률
특허청 (1개)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	폐지	법률

부처명	위원회명	정비내역	근거
보건복지부 (7개)	중앙구호협의위원회	폐지	법률
	중앙재해구호대책위원회	폐지	법률
	중앙생활보호위원회	폐지	법률
	중앙보육위원회	폐지	법률
	모자보건심의회	폐지	법률
	보건정책심의위원회	폐지	대통령령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폐지	법률
환경부 (1개)	하수도자문위원회	통합	법률
노동부 (3개)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폐지	법률
	요양급여심의위원회	통합	법률
	중앙노사정협의회	폐지	법률
건설교통부 (7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	폐지	법률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폐지	대통령령
	도시철도위원회	폐지	법률
	국제공항운영협의회	폐지	대통령령
	유통단지심의위원회	폐지	법률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	폐지	법률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폐지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3개)	어항정책심의회	폐지	법률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폐지	법률
	중앙수산조정위원회	폐지	법률

【불 임 2】

## 미조치 또는 조치불가사유

부 체 명 :

위 원 회 명	정비 내역	미조치 또는 조치불가사유	향후 조치계획

## 【불 임 3】

# 政府委員會內 市民團體 參與擴大 指針

## 1. 推進背景

- 대통령소속 반부패특별위원회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100대 과제중의 하나로 『정부위원회내 시민참여 확대』 추진('99. 8. 30)

## 2. 參與對象

- (1) 위촉직 위원을 두고 있는 위원회 : 205개

- (2) 제외대상 위원회

- 법령에 의하여 당연직위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

- 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

- 향후 폐지대상 위원회

## 3. 參與範圍

- (1) 기존 위원수 범위내에서 전체 위촉위원수의 20%이내

- (2) 연도별 시민단체의 정부위원회 참여 목표율

구 분	1999년 말현재	<u>2000년</u>	<u>2001년</u>	비 고
목표율	8%	<u>15%</u>	<u>20%</u>	위촉직기준

## 4. 參與方法

### (1) 위원회 관계규정에 명시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의 위원위촉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규정을 명문화

< 예시1 > :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원장(또는 당해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예시2 > :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 (또는 당해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2) 기존 위원회는 관계법령 최초 개정시에, 신설위원회는 법령 제·개정시에 근거조항 신설

(3) 당연직 위원만을 두고 있는 위원회로 당연직 위원의 일부를 위촉직 위원으로 대체 가능할 시에는 법령상 위원자격요건의 완화등을 통한 시민단체 추천 위원 적극 활용

## 5. 委嘱時期

- (1) 신설 위원회는 최초위원 구성시에 위촉하고
- (2) 기존 위원회는 임기 만료되는 위촉위원 발생시 시민단체 추천자를 우선 위촉.

※ 위원회별 시민단체 추천 위촉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촉 위원수의 20% 이상 확보될 때까지 우선적 위촉

## 6. 選定基準 및 委嘱節次

### (1) 선정기준

- 위원 위촉의뢰시 가급적 위원회 설립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시민단체에 위촉의뢰함을 원칙으로 하되
    - 예) 환경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 환경관련 시민단체
    - 교육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 교육 · 학술관련 시민단체
  - 시민단체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고려하여
    - 위원회 기능수행에 전문성이 보다 요구되는 경우는 전문성을 보유한 시민단체에 위촉의뢰
    - 전문성보다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국민의 소리 및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 위촉의뢰
    - 다만, 특정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는 제외
- ※ 시민단체 선정은 『2000한국민간단체총람(上·下)』(1999.10월 시민의 신문, 시민운동정보센타 공동발간)을 참조

### (2) 위촉절차

- 위원 위촉의뢰방법은 위원 추천 협조공문 발송등의 방법을 활용
- 위촉과정의 공정성·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전 지명형태는 지양

【붙임 4】

## 시민단체 추천자 위촉 실적 및 계획

< 부(처·청) >

위 원 회 명	계	당연직 위 원	위촉직 위원			향후계획
			위 촉 위원수 (A)	시민단체 추천위원 (B)	비 율 (B/A)	
계	당 초 ('99년말)					
	현 재 (2000.6월말)					
○○위원회	당 초 ('99년말)					
	현 재 (2000.6월말)					
○○위원회	당 초 ('99년말)					
	현 재 (2000.6월말)					
○○위원회	당 초 ('99년말)					
	현 재 (2000.6월말)					

## 【붙 임 5】

### '99년도 소속기관 위임 및 민간위탁·이양 추진실적

부 첨 명 :

대상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위탁 및 이양 근거법령	위임·위탁 및 이양일자	수임·수탁 및 이양 대상기관	비 고

#### < 작성요령 >

- 비고란에는 지방위임, 소속기관위임, 타기관위탁, 민간위탁(아웃소싱·업무대행 포함), 민간이양 등 구체적인 유형 기재
- '99. 5. 24 정부조직개편시 확정된 민간위탁·이양사무에 대한 추진실적은 비고란에 별도로 명기할 것

## 【붙 임 6】

### 미조치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부 첨 명 :

대상사무명	미조치 사유	향후 조치계획	비 고

【붙 임 7】

2000 소속기관 위임 및 민간위탁·이양사무와 조치계획

부 첨 명 :

대상사무명	근거법령	수임·수탁 및 이양 대상기관	조치계획	비 고

< 작성요령 >

1. 수임·수탁 및 이양대상기관란에는 ○○청, ○○사무소, ○○공사, ○○협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
2. 조치계획란에는 「2000. ○월중 법령 개정」, 「2000. ○월중 관계부처 협의후 조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시 조치」 등 조치시기·조치방법 및 선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비고란에는 소속기관위임, 타기관위탁, 민간위탁(아웃소싱·업무대행 포함), 민간이양 등 구체적인 유형 기재
4. '99. 5. 24 정부조직개편시 확정된 민간위탁·이양 대상사무는 비고란에 별도로 명기할 것

【붙임 8】

민간위탁 및 이양 추진 확정사무

< 1999년도 >

부처별	대상기능	비고
계	28건	
민주평통사무처	· 청사시설관리	
국정홍보처	· 영상물·간행물 제작	
관세청	· 각 세관의 통신·감시장비 등 유지·보수	
통일부	· 본부의 전산입력 · 남북회담사무국 청사시설관리 · 통일교육원 청사시설관리	
검찰청	· 대검구내식당 운영 및 서울고검 조경위탁	
국방부	· 본부의 정보화 기술개발 · 국립현충원의 조경, 청사시설관리 · 국군홍보관리소의 인쇄·제본 등 집행기능 · 전산정보관리소의 정보화 관련기능	
병무청	· 전산개발·입력기능 및 운전 · 지방병무청의 전산개발·차량운전	
교육부	· 국제교육진흥원의 교재개발	
과학기술부	· 서울과학관의 청사시설관리	

부처별	대상기능	비고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중앙박물관·국립지방박물관의 매수표 및 청소업무</li> <li>· 국립중앙극장의 매수표, 청소등 시설관리</li> </ul>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기관의 청소등 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중유물전시관,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종묘관리소</li> </ul> </li> </ul>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삼검사</li> </ul>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자유지역관리소(마산·익산) 시설관리</li> <li>· 광산보안사무소의 광해방지 관련기능</li> <li>· 요업기술원 기능(정부출연기관화)</li> </ul>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실태 및 애로조사</li> <li>· 중소기업 자금지원</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기관의 식당운영, 방호, 청소등 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의료원, 국립정신병원(5), 국립결핵병원(2), 국립재활원</li> </ul> </li> </ul>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노동청·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보험징수</li> <li>· 지방노동청·지방노동사무소의 산업상담</li> </ul>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지리원의 지도 인쇄·공급</li> </ul>	

< 2000년도 >

부처별	대상기능	비고
계	5건	
노동부	· 중앙고용정보관리기능	
철도청	· 철도전산정보사무소 운영 · 철도박물관 관리 · 운영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종묘배양장 기능(12개소중 7개소) · 부산·인천항만 관리운영(공사화)	